#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49 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김남희·김문수・박희승

임오경 · 송재봉 · 송옥주

박상혁 • 한정애 • 김우영

용혜인 · 장종태 · 이수진

전진숙 • 서미화 • 소병훈

강선우 · 조계원 · 백선희

의원(1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러한 현행법 규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, 임의 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짐.

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한 평균 준수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89~94% 수준에 머물고 있음.

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

여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,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 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소한 적정 인건비 기준에서 제 시된 보수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,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제3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"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"를 "준수하여야 하고, 그 기준에서 제시된 보수수준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	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
과 신분보장) ①·② (생 략)	과 신분보장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	3
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	
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	
해당 기준을 <u>준수하기 위하여</u>	
<u>노력하여야 한다</u> .	그 기준에서 제시된 보수수준
	이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인
	건비를 지급해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
	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을
	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
	유와 보완계획을 작성하여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
	<u>야 한다.</u>
<u>④·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	과 같음)